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횟수 상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미성년자 대상 스톱킹범죄 가중처벌〉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52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15
가. 잠정조치 기간연장 횟수 상향	15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18
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06. 19.
3. 회 부 일 : 2024. 06. 20.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단서).
- 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 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통지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 라.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 마.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결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된 경우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 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①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의 기간연장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상향하고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며 ③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가중처벌 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	2. ----- ----- ----- -----

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 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u>제9 조제1항제2호에</u> 따른 조치 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등으로 하는 <u>제9조제1항제 2호에</u>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 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u>제9 조제1항제3호에</u> 따른 조치 의 결정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	----- 가. ----- ----- ----- -----제9 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 의6제2항제1호에----- 나. ----- ----- ----- -----제9조제1항제 2호 또는 제17조의6제2항 제1호에----- 다. ----- ----- ----- -----제9 조제1항제3호 또는 제17조 의6제2항제2호에-----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세 차례

-----.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신 설>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⑧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변
경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
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
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
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피해

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 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⑤ 피해자보호명령(제3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3.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

<신 설>

<신 설>

상으로 하는 스톡킹행위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9(항고와 재항고) ① 스톡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 또

<u><신 설></u>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 략) ② <u>흉기 또는 그 밖의 위협한</u>	<u>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결정</u> <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u> <u>있다.</u> 1. <u>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u> <u>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u> <u>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u> 2. <u>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u> <u>경우</u> ② <u>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u> <u>은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u> <u>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에 항고</u> <u>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u> <u>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u> <u>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u> <u>까지를 준용한다.</u> <u>제17조의10(위임규정) 피해자보호</u> <u>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결</u> <u>정을 위한 조사·심리의 방법</u> <u>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u>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u> <u>스토킹범죄를 저지른</u>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벌칙) ① ~ ④ (생략) <신 설>	<u>해당하는</u>----- ----- ----- -----. 1.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u> <u>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u> <u>스토킹범죄를 저지른</u> 사람 2. <u>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톱킹법</u> <u>죄를 저지른</u> 사람 제2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7조의6제2항의 피해자보</u> <u>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제1항의</u> <u>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u> <u>한</u>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
---	--

2. 검토의견

가. 잠정조치 기간연장 횟수 상향

□ 현행법 제9조¹⁾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그 유형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하 “전자장치 부착”)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고,
- 조치 기간은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②~④)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개정안은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유형의 잠정조치가 가능한 최장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 스토킹범죄는 집착적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므로 초범이나 경미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잠정조치 유형 중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강하게 차단할 수 있어 스토킹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현행보다는 장기간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불구속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다만,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 현행 잠정조치의 최장기간은 2023. 7. 11. 법 개정(2024. 1. 12. 시행)에 따른 것으로 종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어 시행된 지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스토킹범죄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이 3~4개월 또는 5~6개월인 점을 비추어 보면²⁾ 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법원행정처는 유사 제도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기간과 비교하여 스토킹행위에 관한 잠정조치기간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 2023. 7. 11.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결과 및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사법정책연구원,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p.397, 2024. 2.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1)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관

□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11. 7. 25.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921호)(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14. 1. 28.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341호)(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규정되었음.

○ 대부분의 피해자 보호조치³⁾가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 등을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⁴⁾.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에 있어 청구권자, 기간 및 벌칙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각 개별법상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비교 〉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관할법원	가정법원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가정법원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거주지 등)	지방법원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등)
요 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권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판사 직권 가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결정권자	판사	판사	법원
유 형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4) 2023. 2. 23. 2019헌바43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	기본 1년 최장 3년	기본 1년 최장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
위반 시 제재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비 고	-	-	효력상실 규정 -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2)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의 적절성

□ 개정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과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어,⁵⁾ 피해자의 요청에도

5)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신청·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잠정조치와는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바, 잠정 조치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최장 9개월간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보다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현재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생활영역을 공유하는 자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 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⁶⁾이 있음.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6) 제21대 국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심사 당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신중검토 의견임.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 사건과 스토킹범죄 형사사건이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 중복 조사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 잠정조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바, 수사·재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되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구속 또는 보호관찰처분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스토킹범죄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17조의7제5항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불송치 결정 또는 무죄·공소기각 판결 등을 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적 명령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⁷⁾된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의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정보호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이하 “가정보호사건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역시 그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보호사건등과 병합·심리도 가능하며 조사·심리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조사·심리의 방향,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7) 2023. 2. 23. 2019헌바43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형사사건 결과에 대한 효력상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안 제17조의6제7항은 법원이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23. 7. 11. 동법 개정을 통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⁸⁾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족관계 등 생활영역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제도라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사관 등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8)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지연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사건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청구사건이 중복하여 계류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 경찰청은 신변안전조치 주체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서 신변안전조치(2023. 7. 11. 시행)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하며 동일한 종류의 신변 안전조치를 별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 개정안 제18조제2항제2호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자가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성인 대상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할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 「형법」 및 「형사특별법」 중 동일 범죄에 대하여 성인이 대상인 경우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입법례⁹⁾는 주로 성범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반적인 보호 필요성에 더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305조¹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규정하면서 피해자를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9)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및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이 있음

10)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구분하되,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¹¹⁾에 따른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제8조의2¹²⁾에 따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박 상태 이용 간음죄 및 제15조의2¹³⁾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11)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즉 또래 청소년간에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인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회입법조사처¹⁴⁾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¹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규정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¹⁶⁾하고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¹⁷⁾하여 적절한 가중 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상향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스토킹행위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14) 박소현, 「이슈와 논점: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2024. 6. 28.

15) 독일: 일반적인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독일 「형법」 제238조제2항제7호)

미국: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더 가중됨. 다만,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킹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미국연방법률 제18장제2261B조)

16) 독일 16세 미만, 미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스토킹행위자의 연령 하한을 구체화하여 또래들간의 스토킹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미성년자 스토킹행위의 경우 흉기휴대의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할 것인지 혹은 흉기휴대 미성년자 스토킹행위와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이루어진 미성년자 스토킹행위를 구별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여 행위 위법성과 형벌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행위 대상과 행위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0